

평창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2. 계약당사자는 이용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.
 - 1) 장기요양 인정서 1부
 - 2)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
 - 3) 급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 - 3)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,급여 계획서 1부 등.
3.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계약기간 -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 - 나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 - 다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 - 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 - 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% 경감한다.
 - 라.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더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.
 - 1) 기관은 수급자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 - 2)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3) 계약해지등 기타사항은 서면, 전화,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,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.
 - 마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)
 - 바.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.

***2020년 방문요양급여비용 표**

구 분		금 액(원)
월 한도액	1등급	1,498,300원
	2등급	1,331,800원
	3등급	1,276,300원

	4등급	1,173,200원
	5등급	1,007,200원
구 분		(방문당) 금 액(원)
방문요양	30분 이상	14,530원
	60분 이상	22,310원
	90분 이상	29,920원
	120분 이상	37,780원
	150분 이상	42,930원
	180분 이상	47,460원
	210분 이상	51,630원
	240분 이상	55,490원
구 분		(방문당) 금 액(원)
방문목욕	목욕차량(차량)이용	74,470원
	목욕차량(가정)이용	67,150원
	목욕차량 미 이용	41,930원

사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(3)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가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나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다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라) 배회선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
마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아. 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자.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